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34회 임시회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의안번호  
3414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3. 4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[박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3414

## I. 개정안 개요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박석 의원(찬성 25명)

나. 발의일자 : 2026년 2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, 돌봄통합 인력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·도지사가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‘우선지정일자리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우선지정일자리 사업 추진 노력을 추가함(안 제3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혜숙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「노인일자리법」)의 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)가 2025년 4월 1일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.
-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2조(정의)에 ‘우선지정일자리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제3조(시장의 책무)에 시장이 ‘우선지정일자리 사업’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## <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우선지정일자리”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·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③·④ (생략)</p>	<p>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
## 2 검토 의견

### 가. ‘우선지정일자리’ 의 정의 신설(제2조제4항)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일자리법」 제15조2의 ‘우선지정일자리’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에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(정의) -----  -----  4. <u>“우선지정일자리”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·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.</u>

- 2023년 10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「노인일자리법」이 제정됨.
- 같은 법 제15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인 ‘우선지정일자리’를 선정하고 고시<sup>1)</sup>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시·도지사는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1) 고시(告示):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로 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절차. 대외적으로 고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고시문에 명시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함.

##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「노인일자리법」) 개정안

제15조의2[본조신설 2025. 4. 1.] [시행일: 2025. 10. 2.]

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(이하 이 조에서 "우선지정일자리"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202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722호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」 제정(안) 행정예고에 따르면 ‘우선지정일자리’에 대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지역 돌봄 통합지원, 노노케어 등으로 정함.

###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」제정령(안) 행정예고

다. 우선지정일자리(안 제6조)

1)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**지역 돌봄 통합 지원, 노노케어** 등으로 정함

- 우선지정일자리의 종류는 사업 유형별로 별표로 고시함. 지역돌봄 통합지원, 노노케어, 경로당 배식 지원, 안전통학지킴이, 경로당 급식 지원, 아동 돌봄 지원 등의 공익사업이 포함됨.
- 2026년 3월 27일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돌봄통합지원법)」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 관련 사업이 공동체사업단, 노인공익활동사업, 노인역량활용사업의 모든 사업 유형에 우선지정일자리로 포함됨.

##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안

제6조(우선지정일자리)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(이하 “우선지정일자리”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

### [별표] 사업유형별 우선지정일자리의 종류

#### 1. 공동체사업단(법 제12조)

사업 유형	주요 내용
지역돌봄 통합지원(공동체)	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도시락·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

#### 2. 노인공익활동사업(법 제15조)

사업 유형	주요 내용
노노케어	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
경로당 배식 지원	경로당에서 배식 등 노인의 식사를 지원
안전통학지킴이	초등학생의 등·하교길 통행 안전을 지원
지역돌봄 통합지원(공익)	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보조,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·발굴 및 모니터링 보조 등 업무 수행

#### 3. 노인역량활용사업(법 제16조)

사업 유형	주요 내용
경로당 급식 지원	경로당에서 배식·조리 등 노인의 식사를 지원
아동 돌봄 지원	안심 귀가 등 영·유아,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
지역돌봄 통합지원(역량)	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지원,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·발굴 및 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업무 수행

나. ‘우선지정일자리’의 우선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(제3조)

- 본 조항은 시장이 상위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우선지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1)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운영 현황

- ‘26년 서울시 어르신 예산은 총 296,653백만원(국비+시비)이 편성되었음. 35%를 부담하는 구비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446,088백만원임.

<2026년 어르신일자리 예산 현황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시 예산 (A+B)	국비 (A)	시비 (B)	구비 (C)	총 사업비 (A+B+C)	비율
합계	296,653	133,747	162,906	149,435	446,088	-
자치구 사업	277,779	128,087	149,692	149,435	427,214	국30 시35 구35
시직속 사업	18,874	5,660	13,214	-	18,874	국30 시70

-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수(참여인원 기준)는 2025년 기준 95,201개가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는 101,866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음.
- ‘26년 1월말 현재 97,542명이 참여하고 있음. 노인역량활용사업 등은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업 개시전 인원은 참여인원으로 포함되지 않음.

-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활동비가 29만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지고, 그 외 일자리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이 가능함.

〈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종류, 대상 및 활동내용〉

(‘26년 기준)

유형	일자리수 (참여인원기준)	참여대상	참여기간	근무시간/ 임금	활동성격
노인공익 활동지원	73,785개	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	10~12개월 (평균 11개월)	월30시간/ 월29만원	봉사 (사회활동)
노인역량 활용	17,658개	65세이상 (일부 60세)	10개월	월60시간/ 월63.4만원 (주휴수당별도)	근로계약 (사회보험 가입)
공동체 사업단	7,720개	60세이상	연중	사업별 상이	
취업 지원	2,703개	60세이상	연중	사업별 상이	

- ‘노인공익활동지원사업’ 은 근무시간이 월 30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무와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업임.
- ‘노인역량활용사업’ 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가 포함됨.
- ‘공동체사업단’ 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.
- ‘취업지원’ 은 교육을 통해 민간일자리에 근무를 알선하며 취업사관학교 등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.

- 전체 어르신 일자리 중 노인공익활동사업이 72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35개소 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음.
-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일자리의 31.2% 운영하고 있으며, 종합사회복지관이 63개소로 참여 개소 수가 가장 많음.

<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별 현황>

(‘26년 1월말 기준, 단위 : 명)

구분	참여인원	시니어클럽	대한노인회	노인종합복지관	자치구	종합사회복지관	비영리단체 등 기타	소규모노인복지센터
합계	97,542	31,718	18,497	12,984	13,372	9,761	5,828	5,382
노인일자리 사업 내 부 구 분	소계	71,678	15,816	14,967	10,365	13,002	9,038	5,113
	노노케어	9,140	725	670	2,336	91	2,579	1,575
	취약계층지원	320	104	166	15	-	-	35
	공공시설봉사	61,749	14,903	13,978	7,904	12,896	6,449	3,436
	경륜전수봉사	469	84	153	110	15	10	67
	기타	-						
노인역량활용사업	16,388	8,917	2,863	1,706	370	632	1,641	259
공동체사업단	6,934	5,232	667	477	-	91	457	10
취업 지원	2,542	1,753	-	436	-	-	353	-

※ '26년 1월말 기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상 등록된 배정 인원임

<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현황>

(‘26년 1월말 기준, 단위 : 개소)

수행기관수	시니어클럽 <sup>2)</sup>	대한노인회	노인복지관	종합사회복지관	자치구	소규모 노인복지센터	기타 <sup>3)</sup>
235	21	26	37	63	22	32	34

- 전체 어르신일자리수(참여인원 기준) 101,866개 중 시직속사업이 3,000개로 2.94%를 차지함.

2) 시니어클럽(노인일자리지원기관)은 용산구('26년4월 설치 예정), 성동구·동작구·서초구(설치 검토중) 외 21개 자치구에 1개소씩 있음  
3) 기타수행기관: 사회적경제조직, 비영리단체 등

## 2) 서울시 우선지정일자리 운영 현황

### <서울시 어르신일자리 활동 현황>

(’26년 기준)

유형	근거법조항 (노인일자리법)	*우선지정일자리 포함 사업	우선지정일자리외 사업
노인공익활동지원	제15조	노노케어 9.4% 경로당 배식 6.3% 안전통학지킴이 7.0%	학교급식, 취약계층지원, 공공시설봉사, 경륜전수 <sup>4)</sup> 등
노인역량활용	제16조	경로당급식지원 1.5% 아동돌봄지원 5.3%	보육·돌봄·청소년시설 지원,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, 시니어컨설턴트 <sup>5)</sup> , 시니어 안전모니터링,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시설, 기관근무
공동체사업단	제12조		식품, 공산품제조, 카페, 택배 등
취업 지원	제10조		민간일자리 알선

- 서울시는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‘우선지정일자리’ 선정 고시 이전 부터 우선일자리로 선정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음.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 중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된 사업은 전체 어르신일자리 29.5%를 차지함.
- 다만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<sup>6)</sup>을 위한 우선지정일자리는 ‘26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배정 당시 미시행되어 ‘27년부터 실시할 예정임.

### ※ 부서 의견 : 원안가결

-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본 조례 제2조(정의)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됨.

4) 경륜전수: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 세대, 아동·청소년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. 건강체조 취미생활지원, 문화공연 활동, 체험활동지원 등의 어르신 일자리가 있음

5) 시니어컨설턴트: 시니어 취업상담, 동행면접, 정보제공 및 기업일자리 발굴 등

6)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합지원을 위한 도시락·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를 담당할 예정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) 신설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과 같이 ‘우선지정일자리’의 정의를 명시하고, 시장으로 하여금 상위법상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는 ‘우선지정일자리’ 선정 고시 이전부터 공익활동사업 및 역량활용사업 등 해당 사업 유형을 포함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. 이에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조문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한편,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임. 따라서 선언적·책무 규정인 제3조(시장의 책무)에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집행계획을 규율하는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 등)의 각 호에 반영하거나 제7호의 ‘그 밖에 필요한 사항’으로 포함하여 사업 수행시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전문위원	김소은	02-2180-8144
입법조사관	김진영	02-2180-8140